

공 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4.

경상남도교육감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



경상남도교육청
<http://www.gne.go.kr>



경상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요강

I 지원 자격

1.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 적용지역(이하 ‘평준화지역’이라 함)
일반고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가. 경상남도 소재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 2)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3)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4)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지역별·학교군별 추천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란 ‘당해 학교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이
경상남도에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의거 인접 시·도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부산광역시 가락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
할 수 있다. <지원81414-839, 2002.07.29.>

※ 부산광역시 가락초등학교 졸업생 중 낙동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경남
김해시 소재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시행)
<부산시교육청 지원과-1656, 2021.3.2.>

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의 자녀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 현황

국토안전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산업기술시험
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11개 기관)

※ 전기학교(추가모집 포함) 불합격자, 전기학교 미지원자는 지원할 수 있다.

2.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이하 “적용지역”이라 한다)의 후기 고등학교 학군은 창원시의 성산구·의창구를 제1학교군, 창원시의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를 제2학교군, 진주시를 제3학교군, 김해시를 제4학교군, 거제시를 제5학교군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아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한다.(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경상남도교육청고시 제2022-10호, 2022.8.9.)

가. 해당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창원대산고등학교, (가칭)북면1고등학교, 마산삼진고등학교, 대곡고등학교, 진서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진영고등학교, 장유고등학교, 김해삼문고등학교, 김해대청고등학교, 김해율하고등학교, 김해수남고등학교 (이상 12개교)

3. 전 항의 학군에 속하는 중학교는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로 한다.

4. 평준화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할 시, 다음의 경우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가. 평준화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재학 중인 중학교가 소재하는 학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이하 지역(장유 1,2,3동 포함)과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포함)는 소속 학교가 인접한 타 학군¹⁾에 지원할 수 있다.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 8. 11.)

나.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학교(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시 다음과 같이 지원하여야 한다.

1) 거주지가 평준화지역인 경우 : 거주지가 속한 학군에 지원

－ 단, 거주지가 창원시·진주시·김해시의 읍 이하 지역(장유 1, 2, 3동 포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지역인 경우는 거주지 인접 타 학군²⁾에

1) 중학교 소재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제2022-10호, 2022. 8. 11.)

2) 거주지가 비평준화지역인 경우 : 희망하는 1개 학군에 지원

5. 외교(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는 다음과 같이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 지원할 수 있다.(지원 방법은 위의 4번에 준한다.)

II 지원 방법

1. 원서 작성 및 접수(NEIS 고입 프로그램)

가. 원서 작성 및 접수 기간 : 2022. 12. 19.(월) 09:00 ~ 12. 21.(수) 16:00

나. 원서 작성 장소 및 접수처

1) 경상남도 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출신중학교에서 NEIS 교무업무 학적 정보와 중학교 내신성적을 기본으로 하여, NEIS 고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서를 작성하고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2) 그 외 지원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 본인이 지원하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NEIS 고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서를 작성하고 접수한다.(학군별 교육지원청은 고입원서 작성대장 비치)

■ 평준화지역 학군별 원서 접수처

학군	제1학군 (창원시 성산구·의창구)	제2학군 (창원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제3학군 (진주시)	제4학군 (김해시)	제5학군 (거제시)
접수처	창원교육지원청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3)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은 NEIS 고입 프로그램으로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원서를 접수하되, 지원자의 자격 해당 여부 및 관련 서류(증빙서류, NEIS 고입 프로그램 출력물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확인한다.

다. 원서 작성 및 접수 방법

1) 입학원서 작성 시에는 입학전형 합격 후 배정을 희망하는 고등학교를 각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만큼 복수 지원하여 제출한다. 단, 외교(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학군(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에 동시지원할 경우 1지망은 외교(국제고, 자사고 포함)를 지원하고, 2지망부터 일반지원자와 동일하게 복수지원 한다.

2) 거주지가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는 1, 2, 4학군, 창원시 마산합포구·합포구는 1, 2, 3학군, 진주시는 2, 3학군, 김해시는 1, 2, 4학군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남·여별 지원 학교 수

● 1학군(남자 14교, 여자 14교)	● 2학군(남자 8교, 여자 8교)
● 3학군(남자 7교, 여자 7교)	● 4학군(남자 9교, 여자 9교)
● 5학군(남자 7교, 여자 7교)	

■ 평준화지역 해당(희망) 학군 지원(예시)

구분	1지망교	2지망교	3지망교	4지망교	5지망교	...
일반지원자	A교	B교	C교	D교	E교	...
동시지원자	외교(국제교, 자사고 포함)	A교	B교	C교	D교	E교

가) 우선배정 신청서 제출자(체육특기자, 지체장애인, 다자녀 학생³⁾, 중증질환자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⁵⁾)는 1개교만 지원한다.(11쪽 배정 방법 참조)

나)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와 특례입학대상자는 3개교만 지원한다.

-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 전형 응시자는 보훈지청장 확인 또는 지원 학생 명의로 발급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3) 체육특기자 전형 응시자는 도교육청의 체육특기자 심사계획에 따라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한다.
- 4) 특례입학대상자는 도교육청의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계획에 따라 출신중학교(출신 중학교가 없는 자는 지원하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 확인 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평준화 서식 9)를 작성하고, 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지원하는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에 개별 접수한다.
- 5)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각각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배정 희망원을 작성하되, 모든 지망학교를 동일하게 기록하여 제출한다. 단, 남녀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남녀공학 학교만 기록한다.
- 6) 평준화 지역(洞지역) 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 1일부터 특정 농·어촌 지역(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

3) 다자녀 학생: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자(가족관계증명서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4) 암·희귀·난치병 관련 환자로 종합병원장 진단서 제출자

5) 부모의 장애등급이 제1에서 제3등급(중증 장애)을 받은 자녀로서 부 또는 모의 장애인증명서 제출자

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를 순차적으로 2지망까지 기록한다.

- 7) 거제시 농어촌지역(이하 '면단위'라 함)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⁶⁾가 평준화 지역(거제시) 일반고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면단위에 소재한 일반고 중,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기록한다.

2.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학교	공 통	2023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지원자 통계보고서(평준화 서식11)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 명부(평준화 서식12) 2023학년도 지원자 각종 통계서식(평준화 서식13) - 석차연명부: 표지와 해당 학생이 있는 페이지를 출력하여 형광펜으로 표시 ※ 평준화지역 원서접수 학교별 1부 제출: 스테플러로 철할 것(원본대조필)
	공 통	- 입학원서 1부(평준화 서식1) ※ 출신 시도 중학교의 석차연명부가 없는 졸업자 및 타 시도 졸업예정자는 '내신성적 증명서' 1부 제출 (내신성적 산출 지침 서식 3, 4)
개인	체육특기자 우선배정희망자	2023학년도 체육특기자 우선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2) - 체육특기자 확인서(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발행 → 지역별 교육지원청 송부)
	지체장애인 우선배정희망자	2023학년도 지체장애인 우선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3)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중학교장 원본대조필) 1부 또는 지체장애인 확인 의사진단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 거주지 약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다자녀 학생 우선배정희망자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우선 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4) -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형(오빠), 누나(언니)의 재학증명서 1부.
	중증질환자 우선배정희망자	2023학년도 중증질환자 우선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5) - 중증질환 관련 의사진단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 거주지 약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6) 면지역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年數)만 인정): (1) 학생이 거제시 면단위 중학교에서 입학 시부터 졸업(예정)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할 것 (단 부모 중 한 명이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2) 학생 본인이 거제시 면단위 초·중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할 것과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중학교 졸업(예정) 시까지 면단위에 거주할 것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 우선배정희망자	● 2023학년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부 또는 모)의 자녀 우선 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6)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의 장애인 증명서(1급에서 3급, 중증) 1부
특정 농어촌 원거리 통학자 근거리 배정 희망자	● 2023학년도 특정 농어촌 원거리 통학자 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8) ● 거주지 약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 이력 포함) ※ 부모 중 한 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정 희망자	● 2023학년도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정 신청서(평준화 서식9) ● 거주지 약도 1부 ●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부모 중 한 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배정 희망자	● 2023학년도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배정 희망원(평준화 서식9) ● 주민등록등본 1부
경남 소재 중학교 졸업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경상남도학교군 · 중학구 고시 관련자 및 해당자)
타 시 · 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석차연명부 1부(원본대조필 한 본인 해당 페이지만) - 석차연명부가 없는 경우 내신성적 증명서 1부(원본대조필) (부록<서식3, 4>) ●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 당해 시 · 도의 내신석차백분율이 기록된 석차연명부가 없는 학생에 한함 ● 특성화중학교 지정서, 자율학교 지정서 사본 1부(해당자, 원본대조필)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또는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특례입학 대상자	● 2023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평준화 서식10) ● 각종 증빙서류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	●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NEIS 고입 프로그램 마감 후 출력물 제출

가. 제출물 : 원서 출력물(첨부물 포함), 증빙서류, 각종 제출 서식 출력물 일체

나. 제출 일시 : 2022. 12. 22.(목) (세부 시각은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름)

다. 제출 방법 : 해당 중학교 → 지원한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

※ 중학교는 체육특기자,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 다자녀 학생, 중증질환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 특정 농어촌 원거리 통학자,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정 희망자, 쌍둥이 동일교 배정 희망자, 학군별 지원자의 원서 및 관련 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은 자체 접수분 [검정고시 합격자, 타 시·도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등] 및 각 중학교에서 제출한 출력물을 취합하여 확인한다.(관련 증빙서류 첨부 여부, 증빙서류에 의한 지원자별 지원 자격 해당 유무 등)

III 전형 방법

1. 전형의 원칙

가. 입학전형은 평준화지역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실시한다.

나.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군별로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형을 실시한다.

다. 체육특기자로 확정을 받은 자는 학군별로 해당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전형을 실시한다.

라.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군별로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전형을 실시한다.

2. 전형 방법

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 이하 동일)에 따른 중학교 내신성적(석차백분율)에 의한다.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중학교 내신성적(석차백분율)은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연도별 검정고시 합격자 석차백분율 조건표에 의하여 전형에 필요한 성적을 산출한다.

IV 합격자 사정

1. 합격자 사정

- 가. 합격자 사정은 학군별로 실시하며, 입학전형 성적[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의한 중학교 내신성적(석차백분율)]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
- 나. 합격자는 학군별로 모집 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하되, '일반지원자'와 '동시지원을 희망하는 외교(국제고, 자사고 포함)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 다. 합격점(컷라인)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한다.
- 라.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는 사정기준에 관계없이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학군별로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마. 체육특기자로 확정을 받은 자는 학군별로 내신성적에 관계없이 교육지원청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선발한다.
- 바.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학군별로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 사.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 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아.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 1) 1순위 :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 2) 2순위 : 내신성적의 출결상황 점수가 높은 자
 - 3) 3순위 :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 4) 4순위 :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2. 합격자 및 배정학교 발표

가. 발표일

- 1) 합격자 발표 : 2023. 1. 6.(금) 10:00
- 2) 합격자 배정학교 발표 : 2023. 1. 13.(금) 10:00

나. 발표 방법 : 합격증은 교부하지 않으며, 배정학교 발표 시 개인별 배정통지서 출력 가능

- 1) 우리 도내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NEIS 고입 프로그램을 통해 출신 중학교장에게 일괄 통보
- 2) 그 외 지원자는 원서를 접수한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일괄 통보

다. 배정된 고등학교별 예비소집 및 등록

1) 예비소집 일시(장소) : 2023. 1. 16.(월) 10:00(배정받은 고등학교)

2) 입학등록 기간 : 2023. 1. 16.(월) ~ 1. 18.(수)

(배정된 고등학교에 '등록확인서' 제출: '평준화서식 15')

※ 위 합격자 및 배정 학교 발표일(등록일)은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 학교 배정

1. 기본 원칙

학교 배정은 평준화지역 각 학군별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 배정 희망에 의거
선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한다.

가. 합격자를 남·여별로 전형성적(출신중학교 내신석차백분율)의 석차 순에 따라 석차
백분율을 소수 둘째자리(셋째 자리에서 반올림)까지 구한 후 다음 표와 같이 9개
석차등급으로 평정한다.

석차등급	등급비율	석차백분율 구간
1	4%	~ 4%이하
2	7%	4%초과 ~ 11%이하
3	12%	11%초과 ~ 23%이하
4	17%	23%초과 ~ 40%이하
5	20%	40%초과 ~ 60%이하
6	17%	60%초과 ~ 77%이하
7	12%	77%초과 ~ 89%이하
8	7%	89%초과 ~ 96%이하
9	4%	96%초과 ~ 100%이하

나.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등급별 배정 인원

○ (등급별 배정 인원) = (입학정원) × (등급비율)

※ 등급별 배정 인원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실제 등급별 배정 인원은 우선 배정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각 학교별 입학정원에 대한 등급별 배정 인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망학교에 추첨·배정한다. 단, 동시지원자는 제1차 추첨·배정에서 제외되고, 제2차

추첨부터 일반지원자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첨·배정한다.

1) 제1차 추첨

- 등급별 1지망자(일반지원자만 적용)를 대상으로 등급별 배정 인원의 100%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2) 제2차 추첨

- 제1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일반지원 미배정자와 동시지원자 중 2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3) 제3차 추첨

- 제2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3지망자를 등급별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4) 제4차 추첨

- 제3차 추첨에서 등급별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 없이 다시 제1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5) 제5차 추첨 ~ 제17차 추첨

- 제4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 중 등급 관계없이 제2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하는 방법으로, 제5차..., 제17차(1학군의 경우)까지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6) 제18차 추첨(1학군의 경우)

- 제17차 추첨에서 배정 인원에 미달된 학교를 대상으로, 미배정자(동시지원자만 해당)중 15지망자를 컴퓨터 무작위 추첨 배정한다.

라. 학군별로 남·여 구분 없이 전체 합격자 수를 총 정원으로 하여, 학교별로 남·여 학급 수 및 정원을 조정하여 배정한다.

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인해 전학조치 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가해 학생을 차순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민주시민교육과의 분리 배정 요청 학생) 만약 가·피해 학생이 마지막 지망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학생을 직전 지망학교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바. 다음 학생 중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는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배정한다.

- 1)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체육영재 육성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2)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로 판정된 자와 중증질환자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통학수단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선택 가능)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3) 다자녀 학생이 전형에 합격한 경우, 원서접수일 현재 형(오빠) 또는 누나(언니)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우선 배정받기를 희망·신청한 경우 ‘정원 내’ 우선 배정
 -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부 또는 모의 자녀는 전형에 합격한 경우 주소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통학수단 :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 선택 가능)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 우선 배정
- 사.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와 특례입학대상자는 각각 학군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하되, 학교별로도 해당학교 정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정
- 아.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각각 동일교 배정 희망원을 받아 추첨에 의해 배정 희망학교 순으로 형(누나, 언니, 오빠)이 배정된 학교에 동생을 ‘정원 외’로 배정
- 1) 동일교 배정을 원할 경우,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모든 지망학교를 동일하게 기록하되,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는 남·여 공학 학교만 기록
 - 2) 동일교 배정을 희망한 남·여 혼성 쌍생아(다생아 포함)가 지망한 학교 중 어디에도 배정되지 않을 경우, 마지막 지망학교에 추가 배정
- 자. 평준화 지역(洞지역) 내 중학교(학교군)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부모, 학생)과 함께 중학교 2학년 3월 1일부터 특정 농·어촌 지역(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자로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전형에 합격하고,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 차. 거제시 농·어촌지역(이하 ‘면단위’라 함)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평준화지역(거제시) 일반고 입학전형에 합격하고 면단위에 소재한 일반고를 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희망할 경우, 순차적으로 추첨·배정을 하되 2지망까지 배정이 안 될 경우 2지망에 ‘정원 외’로 배정한다.

2. 주의 사항

가. 거주지 위장전입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나. 정원 미달에 따른 추가모집은 학군별로 실시한다.

- (1) 추가모집 지원 시 배정학교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없다.(임의 배정 동의)
- (2)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 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학군별로 미달 인원만큼 남·여 구분

없이 통합석차로 선발한다.

(3) 미충원교에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선발대상자와 미충원교의 성비 불일치 시 학군 내 남·녀별 지원 가능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원 외' 2% 범위 내에서 임의 배정한다.

다. 평준화지역(학군 내 학교장 전형 학교는 제외) 수시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에는 이후 어떤 고입전형에도 지원할 수 없다.

마.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의 다른 학교에 입학 배정을 받을 수 없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8항)

바. 과학중점학교의 과학중점과정 이수 희망자는 후기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 및 동일 방식으로 선발·배정된 자 중, 당해 학교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 선정한다.

▣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인가학급 및 모집정원

※ 학군별 지원자 미달 시 학급 수 및 배정 인원, 체육영재 육성 종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역	연번	교 명	설립별	인가 학과·학급		모집정원	체육 영재 육성 종목
창원 성산구 · 의창구 남 14 여 14	1	창원중앙고	공	보통과(남)	9	216	핸드볼, 카누
	2	창원여고	공	보통과(여)	8	192	카누
	3	창원명지여고	공	보통과(여)	8	192	테니스
	4	창원남산고	공	보통과(공)	8	192	롤러
	5	창원중앙여고	공	보통과(여)	8	192	
	6	창원사파고	공	보통과(공)	8	192	골프(남, 여)
	7	창원용호고	공	보통과(공)	8	192	태권도
	8	창원봉림고	공	보통과(공)	8	192	사격(공기소총)
	9	창원신월고	공	보통과(공)	8	192	
	10	창원명곡고	공	보통과(공)	7	168	소프트테니스
	11	창원대암고	공	보통과(공)	8	192	
	12	창원토월고	공	보통과(공)	8	192	
	13	경 상 고	사	보통과(남)	8	192	
	14	창원남고	사	보통과(남)	9	216	골프
	15	창원문성고	사	보통과(공)	9	216	볼링
	16	창 원 고	사	보통과(남)	9	216	
	17	창원경일고	사	보통과(남)	8	192	
	18	창원경일여고	사	보통과(여)	7	168	
	19	창원성민여고	사	보통과(여)	8	192	
평준화지역(1학군)					154	3,696	

지역	연번	교 명	설립별	인가 학과·학급		모집정원	체육영재육성종목
창원 마산 합포구 · 마산 회원구 남 8 여 8	1	마 산 고	공	보통과(남)	7	182	야구, 농구, 테니스
	2	마산여고	공	보통과(여)	7	182	농구
	3	합 포 고	공	보통과(공)	7	182	볼링(남)
	4	마산가포고	공	보통과(공)	6	156	검도, 레슬링
	5	마산구암고	공	보통과(공)	6	156	육상, 태권도
	6	마산용마고	공	보통과(남)	7	182	야구, 씨름
	7	마산내서여고	공	보통과(여)	10	260	볼링
	8	마산중앙고	사	보통과(남)	6	156	
	9	창 신 고	사	보통과(남)	8	208	
	10	성지여고	사	보통과(여)	8	208	배드민턴
	11	마산제일여고	사	보통과(여)	8	208	
	12	마산제일고	사	보통과(남)	10	260	
	13	마산무학여고	사	보통과(여)	8	208	
평준화지역(제2학군)					98	2,548	

지역	연번	교 명	설립별	인가 학과·학급		모집정원	체육영재육성종목
진주 남 7 여 7	1	경상사대부고	국	보통과(공)	6	162	
	2	진 주 고	공	보통과(남)	8	216	축구
	3	진주여고	공	보통과(여)	9	243	
	4	명 신 고	공	보통과(남)	9	243	검도
	5	진주중앙고	공	보통과(공)	8	216	
	6	대 아 고	사	보통과(남)	10	270	
	7	진주동명고	사	보통과(남)	10	270	배구
	8	삼현여고	사	보통과(여)	10	270	
	9	경해여고	사	보통과(여)	10	270	
	10	진주제일여고	사	보통과(여)	10	270	볼링
	11	진 양 고	공	보통과(공)	9	207	
평준화지역(제3학군)					99	2,637	

지역	연번	교 명	설립별	인가 학과·학급		모집정원	체육영재육성종목
김해 남 9 여 9	1	김 해 고	공	보통과(남)	9	252	하키, 야구
	2	김해여고	공	보통과(여)	9	252	하키
	3	김해가야고	공	보통과(공)	10	280	농구, 육상
	4	김해경원고	공	보통과(공)	10	280	카누, 태권도
	5	김해분성고	공	보통과(남)	9	252	사격
	6	김해분성여고	공	보통과(여)	8	184	
	7	김해영운고	공	보통과(공)	8	224	역도, 검도
	8	김해삼방고	공	보통과(공)	8	224	
	9	김해제일고	공	보통과(공)	8	224	
	10	김해중앙여고	사	보통과(여)	6	168	
	11	김해임호고	공	보통과(남)	7	196	
	12	구산고	공	보통과(공)	9	252	
평준화지역(제4학군)					101	2,788	

지역	연번	교 명	설립별	인가 학과·학급		모집정원	체육영재육성종목
거제 남 7 여 7	1	거제중앙고	공	보통과(공)	11	341	탁구(여)
	2	거제제일고	공	보통과(공)	10	280	
	3	거제옥포고	공	보통과(공)	14	392	체조(에어로빅)
	4	연 초 고	공	보통과(공)	11	341	
	5	거제상문고	공	보통과(공)	14	392	
	6	거 제 고	사	보통과(공)	9	279	축구
	7	해 성 고	사	보통과(공)	10	280	
평준화지역(제5학군)					79	2,305	

총 13,974명

평준화 서식 1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 학 원 서				평준화지역 일반고	
접수번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5cm × 4.5cm	
반	번호	성별	졸업(예정)일자		내신석차백분율			
응시분류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희망 여부 (Y / N)				
				특정 농어촌,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근거리 배정 희망 여부 (Y / N)				
주 소								
연락처	보호자전화					학생전화		
배 정 회 망 고 교								
1지망교	2지망교	3지망교	4지망교	5지망교	6지망교	7지망교	8지망교	
9지망교	10지망교	11지망교	12지망교	13지망교	14지망교	15지망교	16지망교	
학 력								
본인은 2023학년도 학군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2년 12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2년 12월 일 중학교장 (직인)								

2023학년도 체육특기자 우선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중학교 (졸업예정 · 졸업)		
현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특 기 종 목					
희망고등학교					
본인은 체육특기자로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우선배정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첨부 : 체육특기자 확인서 1부.

2023학년도 지체장애인 우선 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현 주 소			
재 적 학 년	제 3 학년	지 원 자 명	
지체장애 정도	판정 등급(정도)	희망고교 (통학근거리)	학교명
	학교장(인)		
본인은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로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 받고 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 첨부 1.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 확인 의사진단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2. 거주지 약도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2023학년도 다자녀 학생 우선 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현 주 소			
재 적 학 년	제 3 학년	지 원 자 명	
다자녀 현황	다자녀 수	희망고교 (형,오빠,누나,언니 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교명
	()명		
	학교장(인)		
본인은 다자녀 가정 자녀로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 첨부 1.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가족관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형(오빠), 누나(언니)의 재학증명서 1부

2023학년도 중증질환자 우선 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현 주 소			
재 적 학 년	제 3 학년	지 원 자 명	
중증질환 정도	질환명	희망고교 (통학근거리)	학교명
	학교장(인)		
본인은 중증질환자(암·희귀·난치병 관련)로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 첨부 1. 의사진단서(종합병원장 발행) 1부
2. 거주지 약도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2023학년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 우선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현 주 소				
재 적 학 년	제 3 학년		지 원 자 명	
장애 등급	부	모	희망고교 (통학근거리)	학교명
본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의 자녀로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에 우선 배정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부모의 장애인 증명서(1급에서 3급, 장애 정도) 1부

2023학년도 특정 농어촌 원거리 통학자 근거리 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현 주 소			
재 적 학 년	제 3 학년	지 원 자 명	
본인은 2학년 3월 1일부터 특정 농어촌 거주 원거리 통학자로서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근거리에 배정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첨부 1. 거주지 약도 1부(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2.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 이력 첨부)

※ 특정 농어촌 지역: 진주시 미천면, 진주시 집현면, 진주시 금곡면, 김해시 상동면

2023학년도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배정 신청서

접 수 번 호		재 적 학 교	
현 주 소			
재 적 학 년	제 3 학년	지 원 자 명	
본인은 거제시 면지역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지원 조건에 해당되어 면 단위 일반고 배정을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2. . . 신청자 (인 또는서명)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중학교장 직인			

- 첨부 1. 거주지 약도 1부(주소지에서 대중교통으로 가장 가까운 학교순으로 2지망까지)
2.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주소 이전 이력 전체 기재된 것)
3.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지원자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4. 부모 중 한 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

2023학년도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배정 희망원

()중학교 3학년 ()

()중학교 3학년 ()

위 학생들이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전형에 합격할 경우,
()중학교 ()이 추천·배정된 고등학교에
()중학교 ()을(를)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

신청인 (학생과의 관계 :) (인)

주 소 :

연락처 :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 동일교 배정을 희망하는 쌍생아(다생아 포함) 형제자매는 배정 희망원을 형제자매 모두 작성하며, 지망학교를 반드시 동일하게 작성하여야 함 (서로 다른 중학교일 경우 특히 확인 철저)
- ※ 작성·제출 시 형제자매 중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위쪽(앞쪽)에 기록하여 작성

2023학년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지 원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사 진 (3cm×4cm) 출신중학교 직인		
	주민등록번호						성 별 남 · 여				
	국내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학생)						
					전화번호 (학부모)						
	희 망 학 교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신입학 () 편입학 (학년)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 정 에 해당하는 과		학교소재지 국가명 도시명		정규학교 여 부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국	거주시기 (기간)	여권발급 시 기 (유효기간)	재외국인 등록시기 (기간)	거주국 체류기간	제3국 체류기간	직업	비 고		
본인	해당없음		(년, 개월, 일)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해당 없음			
보호 자	부		(년, 개월, 일)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모		(년, 개월, 일)	(. . .)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년, 개월, 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 특례입학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특례입학 대상자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22년 월 일

지원자
보호자
담 임

인 또는 서명
인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2023학년도 후기 고등학교 지원자 통계보고서

1학군(성산구,의창구)

()학교장 직인

구 분	지원자수			졸 업 구 분														
				졸업예정자			졸업자			검정고시			타 시·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일반지원																		
체육특기																		
지체부자유																		
다자녀																		
중증질환																		
교육지원																		
특례입학																		
계																		

※ 일반지원자 수에 쌍생아(다생아), 특정 농어촌,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외고 동시지원자 수 포함

1. 지원자수와 졸업구분란의 '계'는 일치하여야 한다.
2. 출신중학교에서 지원자 통계보고서와 지원자 명부를 출력하여 접수를 관할하는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다.(제출하는 원서의 매수와 본 통계가 일치해야 한다. 지원자 수 일치)

2023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지원자 명부

1학군(성산구,의창구)

()중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응시분류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개별접수분 출력물과 중학교 출력물(취합본)을 별도로 보관한다.

2023학년도 지원자 각종 통계서식

1. 지역별 통계

()학교장 직인

구 분	총 지원자			평준화지역 출신자			비평준화지역 출신자			비 고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일반지원										
체육특기										
지체장애										
다자녀										
중증질환										
장애부모자녀										
교육지원										
특례입학										
합계										

※ 일반지원자 수에 쌍생아(다생아), 특정 농어촌,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외고 동시지원자 수 포함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2. 체육특기자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지망학교	종목 기재
1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3.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에 한함)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1지망	2지망	3지망
1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4.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포함)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지망학교	판정 등급
1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5. 다자녀 학생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지망학교	형제자매 수
1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6. 중증질환자 학생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지망학교	질환명
1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부 또는 모의 자녀 학생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지망학교	판정등급
1								부: 모: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8. 특정 농어촌 원거리 통학자, 거제시 면단위 일반고 지원자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1지망교	2지망교	집 주소 (예 김해 상동면)
1									
2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9.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배정 희망자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출신 학교	반	번호	성명	접수 번호	출신 학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출생 순	비고
1	00중	1	21	홍길동		00중	홍길동	남	00.00.00	주소	말이	
						00중	홍길순	여	00.00.00	주소	둘째	
2	00중	8	11	홍길순		00중	홍길동	남	00.00.00	주소	말이	
						00중	홍길순	여	00.00.00	주소	둘째	

※ ‘출생순’란에는 ‘말이’, ‘둘째’ 등 출생 순서가 명시됨

※ 중학교별 출력→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가. 출신 중학교에서 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별로 작성, 접수할 때 함께 제출

나. 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별로 출력한 <평준화 서식4>의 내용을 순서대로 취합

11. 외고(국제고, 자사고 포함) 지원자 중 평준화지역 동시지원자 명단

()학교장 직인

연번	접수번호	출신학교	반	번호	성명	성별	1지망교	2지망교	비고
1									
2									
3									
4									

※ 중학교별 출력 → 원서접수 관할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취합·출력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배정통지서

출신중학교	접수번호	성명	반	번호	성별	배정고등학교
00중학교	123456789	○○○	1	01	남자	00고등학교

위 고등학교에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23년 1월 13일

경상남도교육감

2023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등록 확인서

성 명 :

출신중학교 :

생년월일 :

본인은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에 배정되어 입학을 희망합니다.

2023년 월 일

학 생 : (인 또는 서명)

학부모 : (인 또는 서명)

()고등학교장 귀하



기타 전형

I 체육특기자 전형

1. 기본 방향

- 가. 2023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 나. 학교장 전형 학교는 본 평준화지역 체육특기자 전형 지침을 준용하여 학교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다. 학교별 체육영재육성(교기) 지정종목(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종목에 한함)을 대상 종목으로 한다.
- 라. 체육특기자의 정원은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기준)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이내로 한다.
- 마. 체육특기자는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 바. 체육특기자는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한다.
(학교장 전형 학교는 학교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함)
- 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하여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 전형에 내신 성적(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을 각 영역별 50% 반영한다.
- 아. 체육특기자가 평준화지역의 학교 종목별 신입생 정원(인원 배정)을 초과할 경우 전형 영역별 점수의 상위자를 우선 선발한다.
 - 1) 축구, 야구 종목의 신입생 정원은 축구 15명 이하, 야구 15명 이하로 한다.
 - 2) 한 팀의 정원은 축구 45명 이하, 야구 45명 이하로 한다.

2. 지원 자격

가.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1) 대회 범위

- 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도 예선대회 포함)
- 나) 대한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그 시·도 예선대회 포함)

다) 시·도체육회 및 그 가맹 경기 단체가 시·도체육회와 공동 주최한 전국 또는 시·도 규모의 대회

라)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에 한한다.

(1)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주관한 시·도 규모 이상 대회

2) 입상 범위

가) 개인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자

나) 단체경기는 3위 이상 입상한 팀의 선수(무용 제외)

다) 도단위 리그 대회(축구, 야구)를 실시하는 종목은 5경기(여자는 3경기) 이상 출전한 자에 한함

나. 추천 체육특기자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상남도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는 학교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자

1) 신체조건, 소질 및 기타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2) 교육부장관 및 대한체육회장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체육선수 육성 목적으로 유망신인으로 지정 통보한 자

3. 전형 영역별 점수 산출 방법

(단위 : 점)

전형 영역	내신	실적	면접	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100점(50%)	100점(50%)		200점(100%)
추천 체육특기자	100점(50%)		100점(50%)	200점(100%)

가. 내신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을 환산하여 내신 성적으로 반영한다.

1) 배점과 비율

(단위 : 점)

영역	반영 학기	총점	비율	석차 백분율
교과	2학년 ~ 3학년 1학기	160점	100%	%
봉사/학교생활	반영 제외			
출결	(1학년 ~ 3학년 1학기, 전체 결석일수 중 미인정 결석 일수 기록)			

2) 석차 백분율에 따른 환산 점수

배점 구분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석 차 백분율	54이하	55~59	60~64	65~69	70~74	75~79	80~84	85~89	90~94	95이상

나. 실적 및 면접

1) 실적 배점표(축구, 야구 이외 종목)

배점 구분	100	90	80	70	60	50
경기 실적	전국단위 대회 1위	전국단위 대회 2위	전국단위 대회 3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1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2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3위

2) 실적 배점표(축구, 야구)

배점 구분	100	90	80	70	60	50	40	30
경기 실적	전국단위 대회1위	전국단위 대회2위	전국단위 대회3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1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2위	광역시·도 규모 대회 3위	축구,야구 종목 7(5)경기 이상 출전	축구,야구 종목 5~6(3~4) 경기 출전

※ ()는 여자 축구 선수가 도단위 대회 경기에 출전한 횟수임.

3)면접(추천 체육특기자)

추천 체육특기자는 학생신체능력검사(체력 검사), 체격 조건, 학생 의지, 발전 가능성
을 면접 심사하여 합산 점수를 반영한다.

가) 면접 배점표

구분 항목	우수	보통	미흡
체력 검사	25	20	15
체격 조건	25	20	15
학생 의지	25	20	15
발전 가능성	25	20	15

(1) 체력 검사

평가 기준	점수
체력 검사 판정 급수 1급	25
체력 검사 판정 급수 2급	20
체력 검사 판정 급수 3급 이하	15

(2) 체격 조건

평가 기준	점수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는 체격 조건으로 매우 우수	25
해당 종목의 특성에는 적합하나 체격 조건은 보통	20
해당 종목의 특성에 맞지 않고 체격 조건이 미흡	15

(3) 학생 의지

평가 기준	점수
해당 종목에 대하여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가 뛰어남.	25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나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함.	20
해당 종목에 대하여 관심이 떨어지며 자세가 소극적임.	15

(4) 발전 가능성

평가 기준	점수
해당 종목을 잘 이해하고 의욕적이며 성실하게 참여하고자 함	25
해당 종목을 이해하나 의욕적이고 성실한 태도가 보통임	20
해당 종목의 이해가 부족하고 성실성이 떨어짐	15

4. 심사원서 제출 방법

가. 영역별 필요 서류

1)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가)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1]

나) 증빙서류

(1) 개인 경기인 경우 : 상장 사본 (원본대조필-해당 학교장)

(2) 단체 경기인 경우 : 상장 사본 뒷면에 엔트리 명단 기입 후, 해당 경기 단체장이 확인한다. (원본대조필-해당학교장)

※ 골프와 무용은 배정희망 학교장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3)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총점)기록 / 학교장 직인 날인)

※ 해당 학생 부분만 출력 제출

2) 추천 체육특기자

가) 추천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2]

나) 배정 희망 학교장 동의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3]

다) 재적교 학교장 추천서 1부[체육특기자 서식4]

라) 석차연명부(내신석차 백분율(총점)기록 / 학교장 직인 날인)

※ 해당 학생 부분만 출력 제출

나. 심사원서 제출

1)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가) 제출 기간

(1) 중학교 → 교육지원청 : 2022. 10. 4.(화) ~ 10. 14.(금)

– 시행문 전자문서로 접수대장, 심사원서 및 증빙서류는 인편제출 후 확인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희망자는 해당 고등학교의 전형일정에 따라 해당고등학교에 직접 제출)

(2)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2022. 10. 17.(월) ~ 10. 21.(금)

– 시행문 전자문서로 접수대장, 심사원서 및 증빙서류는 인편 제출 후 확인

나) 제출 장소

(1)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희망자 : 중학교→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2)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 희망자 : 중학교→해당 고등학교

2) 추천 체육특기자(평준화지역 전 고등학교)

가) 제출 기간 :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의 일정과 동일

나) 제출 장소 : 중학교→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3) 비평준화지역(학교장 전형 학교)의 입상실적 체육특기자와 추천 체육특기자의 심사원서 제출 기간 및 제출 장소는 해당 학교의 고입전형 계획에 따른다.

5. 지원 및 전형 방법

가. 체육특기자의 실적 인정 기간은 중학교 재학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나. 평준화지역 고입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체육특기자 확인서를 교부받아 입학원서에 체육특기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학군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며(경상남도교육청 고입전형 요강 절차에 따름), 그 외 비평준화지역(학교장 선발 학교)은 해당 학교에 입학원서(체육특기자 확인서 포함)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다.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는 체육특기자는 전형(선발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라. 체육특기자로 확정된 자는 해당지역 모집정원의 3% 범위 이내에서 선정·배정한다.

마. 학교의 종목별 신입생 선발 정원이 초과되었을 경우 실적체육특기자를 추천체육특기자보다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전형영역별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발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 석차백분을 환산 점수가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2순위 : 입상실적(면접점수)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3순위 : 미인정결석 일수가 적은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4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바. 1희망 학교에 불합격한 경우 2희망, 3희망 학교에 합격 할 수 있다.

6.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설치

가. 경상남도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

1) 평준화지역(창원, 진주, 김해, 거제시 일반고)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배정

2) 평준화지역(창원, 진주, 김해, 거제시 일반고) 추천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배정

나. 학교 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학교장 전형 고등학교)

- 학교별 입상실적 체육특기자 및 추천 체육특기자 고입 심의

다. 학교 자체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입상실적(추천) 체육특기자 접수대장

2) 입상실적(추천) 체육특기자 선발 심의 대장

3)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회의록

2023학년도 입상실적체육특기자 심사원서

접수 제 호

현주소							사 진 3cm×4cm (직 인)
성 명	(한자)	생년월일	00.00.00				
학 력	년 월 일	중학교	졸업 졸업예정				
(평준화지역)	1지망		특성화고 학과별 지원순위	1지망			
일반고	2지망			2지망			
지원학교	3지망			3지망			
지원종목			대회일시	수 상 실 적	환산점		
입상내용	대회명						
				위			
내신성적	총점	석차백분율	환산점	출결사항	미인정결석 일수		
위 기재 사항은 제반 기록을 대조한 결과 사실과 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22년 월 일							
중학교장(직인)							
본인은 2023학년도 적용지역 ()고등학교 신입생 특기자 심사를 받고자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2022년 월 일							
응시자 (인)							
보호자 (인)							
경 상 남 도 교 육 감 귀 하							

2023학년도 추천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1. 지원종목 ()

2. 지원학교 ()

사 진
3cm×4cm
(직 인)

3. 인적사항

소속학교	학년	성명 (한자)	생년월일	미인정결석 일수	체력검사판정급수
중학교		()	2007. 0. 0.		()점 ()급

4. 내신성적

총점	석차백분율	환산점

5. 신체조건

신 장	cm	체중	kg

위 학생은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심사를 받고자 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중 학 교 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배정 희망 학교장 동의서

1. 소 속	
2. 학 반	
3. 성 명	(한자 :)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학생은 운동선수로서 신체조건과 소질이 뛰어나 본교

()부 체육특기자 배정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재적교 학교장 추천서

1. 소 속	
2. 학 반	
3. 성 명	(한 자 :)
4. 생년월일	년 월 일

위 학생은 운동선수로서 신체조건과 소질이 뛰어나 배정희망교의
()부 체육특기자로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 고등학교장(직인)

경상남도체육특기자심사위원장 귀하

II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학교 입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의거,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진학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한다.

1. 신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선정과 배치를 함께 신청함)

가. 신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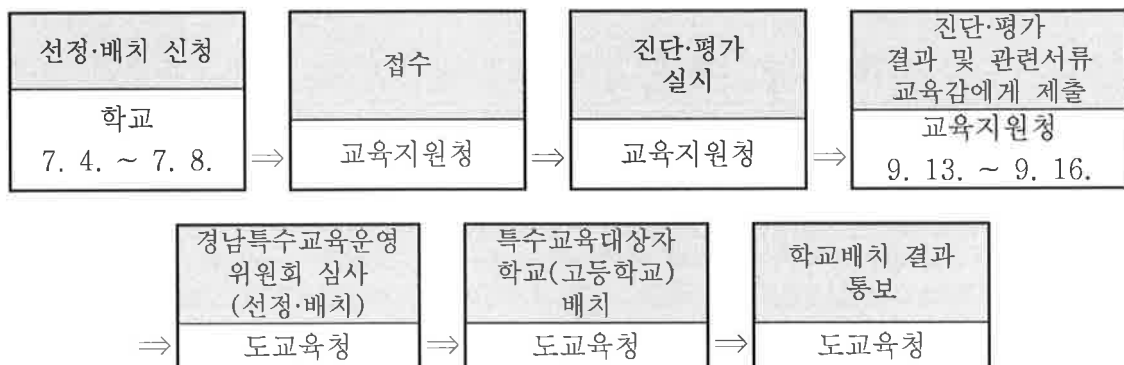
- 1) 2023학년도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자
- 2) 건강장애 학생 중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 건강장애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시 진단평가 재실시)

나. 제출 서류(건강장애 포함)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1부
-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1부
- 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1부
-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 5)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학교장 의견서 1부
- 6) 건강장애 선정·배치 희망자는 의사진단서 1부

다. 제출시기 : 2022. 7. 4.(월) ~ 2022. 7. 8.(금)

라. 업무추진 절차



마. 제출처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 기존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배치만 신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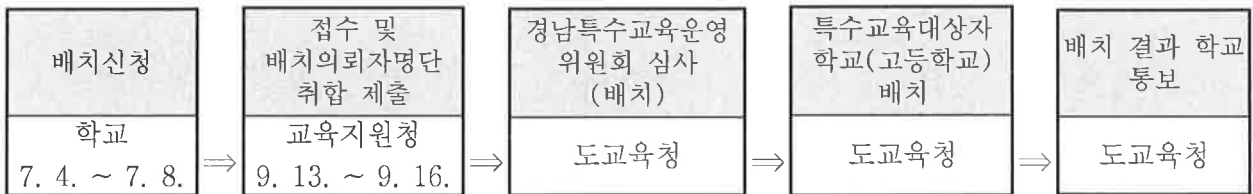
가. 신청대상 : 중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나. 제출서류

- 1)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의뢰자 명단 1부
- 2)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1부
- 3)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결과 통지서 또는 배치 결과 통지 공문 사본 1부

다. 제출시기 : 2022. 7. 4.(월) ~ 7. 8.(금)

라. 업무처리절차



마. 제출처 :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업무

가. 주요 업무

- 1) 신규 신청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 2) 진단평가 결과 및 관련 서류 취합

나. 제출서류 : 생략 (7월 중 공문을 통해 알림)

다. 제출일시 : 2022. 9. 13.(화) ~ 9. 16.(금)

라. 제출처 : 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마. 제출방법 : K-에듀파인,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바. 기타 안내 사항

- 거주지 가까운 곳에 특수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원거리 특수학교(급) 배치 사례 방지
-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지 이전 없이 원거리 특수학교(급)로 전학하는 사례 방지
- 중학교 과정의 건강장애 학생 중 출석에 문제가 없는 학생은 고등학교 진학 시 건강장애 선정 제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일반전형으로 고등학교 진학 준비 당부
-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진학 시 신청에서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
- 고등학교 배치가 완료된 후에 배치변경신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신청할 것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앞 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한 자)			성 별 남 여
	도로명주소			
	소 속			
	배치희망학교	희망사유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학교장)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절 취 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접수증

접수번호

소 속	학 생 명	성 별	비 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			

서식 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학교

순	배치 희망학교 (○○학급)			재학 학교 (학년)	성명	성별	도로명 주소	생년 월일	선정 · 배치	치료지원 신청여부 (○,×)	연락처		복지 카드		의료적 처치
	1 지 망	2 지 망	3 지 망								보호자명 (연락처)	담당교사명 (연락처)	영역	등급	
1															
2															

서식 3-1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일반)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대 상 자	성 명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도로명 주 소	(휴대폰:)				
	소 속	학교 제 학년				
기 초 자 료 내 용	장애인 등록사항	장 애 명	장애등급	검사(판정)기관		등록 년 월 일
			급			. . .
	발육 및 건강상태			기 초 학 력	읽기 및 쓰기	
					수 개념	
	행동특성 및 요인			보호자 의 견		
	사회생활 적응능력			담임의견		
	기 타					
	장애유형			배 치 유 형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 ()	
년 월 일 작성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희망하는 학생의 담임교사가 작성함

서식 3-2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건강장애학생용)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대 상 자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도로명 주소				연락처			
	소 속	학교 제 학년						
기 초 자 료 내 용	병명 및 특성	특성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의사진단서 요약		출 결 사 항	연도	수업 일수	등교 일수	미등교 일수	
				2022				
				2021				
				2020				
	학교생활 모습		보호자 의 견					
담임의견								
예상치료 기간		희망수업 지원영역		병원학교입급 () 원격수업신청 ()				
년 월 일 작성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1)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학업수행 등에 있어서 교육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학생
- ※ 유의점 - 심장병으로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해야 하나 학업에는 지장이 없을 경우 대상자가 아님
- ※ 출석일수 기재 시 등교일수를 계산하여 기재[등교: 학교출석, 미등교(원격수업수강 포함)]

서식 4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신청서

소속	()학교 제 학년 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도로명주소			전화	
희망지	희망 학교명	집-학교간 거리(Km)	희망 학급(희망에 ○)	
1희망		00.0 Km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2희망		00.0 Km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3희망		00.0 Km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장애판정	장애영역	()장애 ()급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신청)영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의 해당 영역 기록(필수)		
보호자의 견				
위 희망 고등학교에 배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신청자(학생) (인)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 학교장 (직인)				

※ 신입생 : 희망학교 란에 1희망, 2희망, 3희망 모두 기재(거주지 가까운 학교를 신청)

※ 재학생 : 희망학교 란에 재학하고 있는 학교만 기재

※ 특수학교 배치 희망자는 희망 학교명만 기재

※ 반드시 보호자 자필 서명

III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1. 목적

특례 요건 및 자격·구비 서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이해를 돕고,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함

2. 관계 법령

- 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입학자격 등)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학급수·학생수)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입학전형방법)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마. 「중·고등학교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변경 알림[교육부 학교정책과-3316(2014.05.30.)]
- 바. 「중·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처리요령」 교육부 고시 제2019-214호)

3. 특례입학 대상자 및 자격요건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해당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자
 -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초·중 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자에 한함)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해당자

구 분	자 격 요 건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 가목)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 나목)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인 학생 (제2호 다목)		외국인 학생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3호 해당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4호 해당자

-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제97조제1항제3호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제98조의3제1항 :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인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의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4.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 기준 및 범위

가. 외국의 학교 인정 범위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 제2언어로서의 영어),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정규 학교의 학력만 인정)

나. 외국의 학교 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다.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 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라.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마. 초·중·고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기준

※ 외국 학제의 국내 학력 인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8조)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초등의 경우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중학교의 경우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중학교의 경우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 당해국 학년제의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5. 외국에서의 거주 및 재학 기간

가. 외국 거주·체류·재학 기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가목해당자)

구 분	거주기간	실체류기간	재학기간	비 고
부 모	2년 이상	1년 이상	-	거주 기간 내의 실체류 기간 거주 및 실체류 기간 동시 적용
자 녀	2년 이상	-	2년 이상	거주 기간 및 재학 기간 동시 적용

※ 외국 학교에의 입학수속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의 제3항 제2호 가목의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2년에서 미달된 때에는 도교육청에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각 2월의 범위 안에서 거주기간과 재학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기간 산정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거주기간	특정국가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당해국가에 실제 거주한 기간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최초 입국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으로 입증)
체류기간	거주기간 내에서 당해국가에 실제 체류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
재학기간	-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당해국의 교육 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귀국자의 특례입학 관련 재학기간에 따른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예시)

-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 아님
-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일 경우 특례입학대상자 인정(유학기간 중 공백이 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학기간이 필요함, 단 초등학교 1~3학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6. 특례입학 처리

가. 특례입학의 적용

1) 특례입학 종류별 인정범위

구 분	특례입학 인정범위
외국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자	• 국내 동일급별 학교에의 특례 전·편입학 •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외국 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 국내 직 상급학교에의 특례 신입학

2) 특례입학 허용 기한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외국소재 중학교 최종 재학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소재 고등학교 최종재학 학기가 시작된 날부터 1년 이내 (2개 학기만 특례입학 허용)
특례 신입 학예 정자	외국소재 초·중학교 졸업자	초등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 (6학년 1학기 초)로부터 1년 6개월 이내(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1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외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중학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로부터 3년 6개월 이내 (2개 학년도만 특례입학 허용)

3) 특례입학 효력

구 분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특례 전·편입학 예정자	중학교 전·편입학과 고등학교 신입학 시 각 1회 특례인정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 1회 특례인정
특례 신입학 예정자	중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인정	고등학교 신입학 시에만 1회 특례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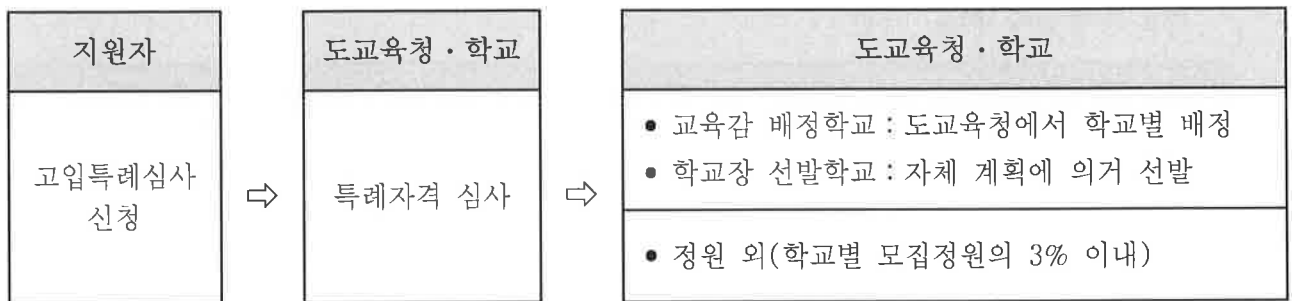
※ 외국인 및 북한이탈주민인 학생은 위 특례입학 허용 기한 및 효력에 관계 없이 특례입학 가능

7. 특례입학의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경상남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상 주소지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학교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입학 자격 심사 후 학교별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

나. 절차



8. 특례유형별 구비서류

가. 특례입학 신청서 <서식 1>

나. 귀국자 특례입학 구비서류

구비서류	해당자별 제82조 3항 제1호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학생 (제2호 가목)	과학기술 자 및 교수요원 의 자녀 (제2호 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 이탈 주민 (제3호)	제82조 3항 제4호	정원 내 입학자 (일반전 편입학 자)	비 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 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제학) 증명서	○	○	○	○	○			○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 티유 인증
유학 전, 국내 최종 학교 제학 (졸업 등) 증명서		(○)	(○)					(○) (학생)	가까운 초·중·고교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가족관계증명서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민원24 홈페이지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서식2>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주무부처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 공관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부, 모, 학생)				○ (부모, 학생)	○ (학생)				행정구청 및 주민센터, 출입국 관리사무소, 민원24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 확인서	(○)					○	○		해당 행정구청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	(○)					○	○		해당 행정구청
학력인정 증명서	(○)						○		경남교육청 진로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평준화)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구비서류 중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 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다만,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기관임을 소명(해당국 관할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

제1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각 1부,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외국학교 전 학년 졸업(이수)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제4호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학력심의위원회 인정서 1부, 특례입학신청서 1부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특례자격이 취소됨

※ 부정 특례입학 방지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외국 학교 성적(재학)증명서에 반드시 정규 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붙임 1> 참조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서식 1>

고등학교 특례 입학 신청서

지 원 자	성 명		한 글		한 자		영 문		사 진 (3cm×4cm) 출신중학교 직인		
			홍길동		弘吉動		Hong Gill Dong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 별	남 · 여			
	국내 연락처	주소	가나시 다라구 마바로 123 아자아파트 123동 456호				전화번호 (학생)	010-1234-5678			
							전화번호 (학부모)	010-1234-8765			
	희 망 학 교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신입학 ()		
			가나고등학교		다라고등학교		마바고등학교		편입학 (학년)		
	기 간		학 력 사 항					국내학교 과 정 에 해당하는 과	학교소재지		정규학교 여 부
								국가명	도시명		
			2017.2.28. 가나학교 5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2017.3.-2018.2. (년 개월) 다라학교 6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초등 6학년	중국	가나시	○	
		2018.3.-2020.2. (년 개월) 마바학교 2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중학교2학년	중국	다나시	○	
		2021.3.-2022.2. (년 개월) 사아학교 3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 학교 학년 졸업(예정) · 수료 · 재학중									
보 호 자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국	거주시기 (기간)	여권발급 시 기 (유효기간)	재외국인 등록시기 (기간)	거주국 체류기간	제3국 체류기간	직업	비 고	
	본인	해당없음	중국	2017.3.-2019.2. (2년,개월,일)	2015.1.-2020.1. (5.0.0.)	2017.3.-2019.2. (2년,개월,일)	0년,0개월,0일		해당 없음		
	부	이도령 (19700301)	중국	2017.3.-2019.2. (2년,개월,일)	2015.1.-2020.1. (5.0.0.)	2017.3.-2019.2. (2년,개월,일)	0년,0개월,0일		해당 없음	번역가	
	모	성춘향 (19720501)	중국	2017.3.-2019.2. (2년,개월,일)	2015.1.-2020.1. (5.0.0.)	2017.3.-2019.2. (2년,개월,일)	0년,0개월,0일		해당 없음	번역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고등학교에 입학하고자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등학교 특례 입학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특례입학 대상자 구비서류 목록에 의한 관련 서류

2022년 월 일

지원자 홍길동 인또는서명
 보호자 이도령 인
 담 임 최선율 인

경상남도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서식 2>

국내거주사실 확인서(재외동포 자녀용)

성명 : (한자 : 영문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성별 :

위 학생은 재()동포 부(), 모()의 자녀로서 모국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국하여 아래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주 소 :

신청인 성명 :

학생과의 관계 :

년 월 일

확인자 ()동 ()통장 성명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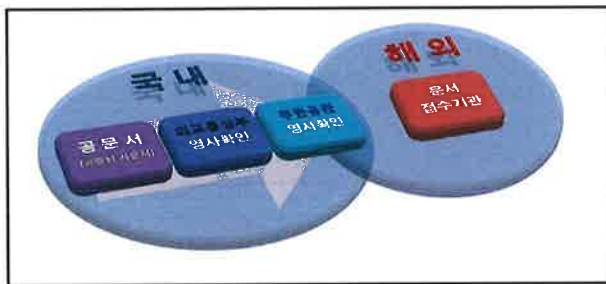
귀하

(붙임 1)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관련 안내

■ 아포스티유 협약은,

-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외교부 발행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 협약가입국가 발행 공문서(성적증명서 등)에 대해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이 정식 발효('07.7.14)



<기존의 영사 확인 방식>



<아포스티유 확인 방식>

■ 아포스티유 발급 및 제출

- 해외 학교의 공문서(성적증명서 등) 발급 ⇒ 해당 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확인(Apostille 부착) ⇒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행정 사항

구비서류 심사시 참고 사항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단, 종전의 방법(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함
-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총 121개국)

(2022. 6. 4. 기준)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21개국)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필리핀, 팔라우, 인도네시아
유럽 (52개국)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개국)	미국(괌, 마우리제도,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포함)
중남미 (31개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자메이카
아프리카 (12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튀니지
중동 (4개국)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참고>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2023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 대상 2023학년도 고입 추가전형 및 배정 계획

I 추진 배경

1.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한 중·고교 입학 시기 제한 폐지로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입학 기회가 확대 됨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 규제 완화

[종전] 중·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

[변경]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가능

☞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2/3이상 남은 시기로, 학교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각 학년도 5.30일까지 가능

2. 2023학년도 고입전형에서는 2023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를 대상으로 후기평준화지역 일반 고등학교 배정 희망자에 대하여 고입 추가전형 실시 계획을 마련하여 규제 개혁의 효과를 제고하고 도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II 관련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중학교 입학 시기 등)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준용)
3. 「교육부 학교정책과-630(2015.2.10.)」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III 2023학년도 고입 추가전형 기본 방침

1. 지원자격

○ 2023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로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

☞ 위의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이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함

2. 대상학교 및 전형 방법

- 가. 학군별로 전·편입 온라인 배정시스템 4월 학생 현원 등록일(2023.4.30.) 기준
결원(학교별 1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이 있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 나.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학군별 일반고 합격 결정 석차백분율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하되, 합격 대상자 수가 위 가.항의 결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결원 범위 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3. 전형 일정

※ 2023년 제1회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일 시	비 고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2023.5.10.(수) ~ 5.11.(목) 09:00~17:00	경상남도교육청 본관 3층 진로교육과 ☎ 055)268-1388, 1389 <우편 접수 불가>
추가전형 배정 결과 발표	2023.5.12.(금) 14:00	개인별 안내(문자전송 등)
입학 등록	2023.5.15.(월) ~ 5.16.(화) 09:00~16:30	배정 고등학교
입학 일자	2023.5.17.(수)	

☞ 2023년 제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일정(예정)

- 시험일 : 2023. 4. 8.(토)
- 합격자 발표 : 2023. 5. 9.(화)

4.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경남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발급 가능)
- 2023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배정원서 1부<서식1>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경상남도 거주)
[전가족(부, 모, 학생) 모두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함]
- 도장(본인, 보호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추가서류(주민등록상 부모 모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 부모이혼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기본증명서(학생, 친권자기재) 1부
(학생과 분리된 부모가 친권자인 경우 입학배정 동의서<서식2> 1부)
- 부모 별거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1부, 학생과 분리된 부모의 입학배정 동의서 1부, 학생과 분리된 부모의 사유서<서식3> 1부, 학생과 분리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III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고입 추가전형 배정 계획

1. 대상자 : 2023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추가전형 합격자
2. 대상학교 : 2023. 4. 30. 기준 전입학 결원이 있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3. 추가전형 배정 정원
 - 일반 학생은 배정 희망에 따라 거주지 학군 내 학교에 학교별 1학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
4. 추가전형 배정 방법
 - 가. 2023학년도 전기학교 또는 후기학교에 선발 및 배정된 사실이 있는 자(추가 선발 포함)는 전형 대상에서 제외
 - 나. 2023. 4. 30. 기준으로 산출한 대상 학교 결원 범위 내에서 희망에 따라 전산 추첨 배정
(단, 제 1, 2, 3 지망교에 결원이 없을 경우 결원이 있는 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IV 유의 사항

1. 이중지원이 확인될 경우, 추가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 취소
2. 배정학교 변경 불가
3. 입학등록기간 내 등록을 포기할 경우, 2023학년도 고등학교 진학 불가
(※ 2024학년도 고입전형 지원 가능)

<서식 1>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배정 원서

지원자	성명		생년 월일	.	.	.	성별	남, 여	접수 번호	
	휴대폰 번호									
배정 희망 학교	제1지망교			제2지망교			제3지망교			
	※ 배정 희망 학교는 지원자가 직접 선택, 배정원서 접수 후 변경 불가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	집		
								휴대폰 번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은 위와 같이 2023학년도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인 또는 서명) 보호자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전 가족이 실제로 경상남도에 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으로 밝혀질 경우 배정을 취소함.										

입 학 배 정 동 의 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학생과의 관계 :

상기 본인의 자녀인 ()의 경상남도 내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로의 입학배정에 동의하며, 추후에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부모 중 한 명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작성(주소를 이전하지 못하는 부모가 작성)

사 유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연 락 번 호 :

학생과의 관계 :

상기 본인은 학생 _____의 (부, 모)로서 (_____
_____) 사유로 동 사유서를 제출하며, 기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부모 중 한 명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작성(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부모가 작성)

2023학년도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입학예정자 중 타 학군 거주이전(예정)자 입학 전 재배정 계획

1. 목적

2023학년도 경남 평준화지역(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거주지가 도내 평준화지역 타 학군으로 이전되어, 현 거주지(거주예정지)내 입학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 전에 학교를 다시 배정(재배정)함으로써, 원 배정학교 입학 후의 전입학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조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교과서, 교복)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3. 대 상

- 가. 2023학년도 경남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전입학 제한일(2022.11.1.)부터 학교배정 발표 전일(2023.1.12.)까지 도내 평준화지역 타 학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중 재배정 희망자
- 나. 2023학년도 경남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학교 배정 발표일(2023.1.13.)부터 2023학년도 시작 전일(2023.2.28.)까지 도내 평준화지역 타 학군으로 거주이전 되었거나 거주지 이전 예정인 자로 학교 배정 발표 전일(2023.1.12.)까지 이미 이전 계약이 완료된 자 중 재배정 희망자
- 다. 2023학년도 경남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부모가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배정이 된 자로 재배정 희망자
- 라. 2023학년도 경남 평준화지역 학군 내 일반고에 배정된 자 중, 학교폭력 행위로 전학(제8호) 이외의 조치(제1호~제7호)가 내려진 가해자와 동일 학교에 배정된 피해자 중 재배정 희망자

4. 처리 절차

가. 신청서 접수 : 2023. 2. 6.(월) 09:00 ~ 2. 15.(수) 17:00

※ 신청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부서별 누리집/진로교육과-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서 사용할 수 있음(<http://www.gne.go.kr>)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3층)

다. 제출 서류

1) 거주지 이전자(위 3. 가항 해당자)

가)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재배정 신청서 <서식1> 1부

(1)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2) 배정받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나)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통지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통(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고, 전 가족⁷⁾ 등재 및 거주변동 내용이 기재된 것)

라) 해당자 추가 서류

(1) 부모 중 한 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가)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가 거주지에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기본증명서 1부(학생)

(나)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거주지에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기본증명서 1부(학생), 친권자의 친필동의서 1부

(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 1부(제적 사항이 기재된 것)

2) 거주이전 예정자(위 3. 나항 해당자)

가) 위 거주지 이전 자(위 3. 가항 해당자)와 동일한 서류 제출

나) 해당자 추가 서류 : 일반주택 거주예정 확인서 <서식2>

또는 공동주택 입주예정 확인서 <서식3>

-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원본(공인계약서), 사본 1통(원본은 대조 후 반환)

※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7) 전 가족: 부, 모, 해당 학생을 말함

■ 거주 사실 판단 기준

1. 실제 거주 :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함

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나.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부모 중 일방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

2. 거주 위장

※ 다음의 경우는 거주 위장 사례로 간주함

가.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나.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

다.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3) 부모 재직 고등학교 배정자(위 3. 다항 해당자)

가)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재배정 신청서 <서식1> 1부

(1)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2) 배정받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나)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통지서 1부

다) 부모 재직 중인 고등학교에 배정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4) 학교폭력 관련 가해자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위 3. 라항 해당자)

가)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재배정 신청서 <서식1> 1부

(1) 출신 중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2) 배정받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나) 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통지서 1부

다) 학교장 의견서 <서식4> 1부

라) 학교폭력대책자치(심의)위원회 조치 통보 공문(피해사실이 기록된 피해학생의 출신중학교 증빙자료) 1부

라. 추첨 및 배정 발표 : 2023. 2. 17.(금) 14:00 도교육청 누리집 진로교육과 자료실 탑재

마. 배정 방법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정원의 5%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은 경우 제1, 제2, 제3지망 순서에 따라 배정함. 단, 제 1, 2, 3지
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미달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바. 입학등록 : 2023. 2. 20.(월) ~ 2. 22.(수)

○ 재배정 학교를 방문하여 거주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등록

5. 기대 효과

- 가.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재배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
- 나.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입학 및 전학 행정절차 간소화
- 다.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 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과 추가적 학교폭력 피해 등을 방지

6. 기타 유의사항

- 가. 재배정 희망학교는 3지망 학교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나. 학교를 재배정 받은 후에는 배정 학교를 변경할 수 없음
- 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임이 밝혀질 경우 배정을 취소함
- 라. 반드시 원배정 학교에 입학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배정 학교장은 재배정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실제 거주 사실 확인 및 조사 실시

※ 문의처 :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 268-1388, 1389

<서식1>

2023.경남 평준화지역 일반고 재배정 신청서

경상남도교육청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20 . .	성별	남, 여	접수번호	
재배정 희망 학교	제 1지망 학교		제 2지망 학교		제 3지망 학교			
주소	전주소	※ 부모 재직 고등학교 배정자는 공란으로 둘 것						
	현주소 (도로명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타 학군 재배정 사실 증명	배정받은 고등학교	위 학생은 2023학년도 본교 신입생으로 배정되어 등록하였으나, 거주지(이전, 이전예정) 고등학교, 부모재직교 이외의 고등학교, 학교폭력관련 가해자 배정 이외의 고등학교로 재배정을 희망하는 학생임. 2023년 2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출신 중학교 (고입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위 학생은년월 본교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전 가족 거주지 (이전자, 이전예정자) 또는 부모재직 고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가해자 고등학교 배정자임을 확인함. 2023년 2월 일 중학교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상기와 같이 전 가족 거주지 (이전, 이전예정), 부모 재직교 이외의 고등학교, 학교폭력관련 가해자 배정 이외의 고등학교로 재배정을 신청하며, 재배정 받은 고등학교에 등록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서식2>

일반주택 거주예정 확인서

- 성 명(학생) :
- 성 별 : 남 · 여
- 현주소(도로명 주소) :
- 보호자성명 : (인) 관계 : ()의 ()
- 세대주성명 :
- 거주지 약도

※ 거주지 약도 : 큰 도로 및 큰 건물을 중심으로 작성(전화번호 :)

2023년 월 일

전 가족이 위 주소에 거주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동 ()통장 : (인) (전화번호 :)

2023. . .

담임교사 : (인)

()중학교장 (인)

<서식3>

공동주택 입주예정 확인서

■ 입주예정자(계약자)

성명	
주소 (도로명주소)	
생년월일	
학생명	()중학교 ()

위 사람은 아래의 공동주택에 입주 예정자임을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일		2023년 월 일
공동 주택	주택명	
	통장	(인) (전화번호 :)
	주소 (도로명주소)	
	우편번호	()

2023. . .

담임교사 : (인)

()중학교장 (인)

<서식4>

학교장 의견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교 학년 반 졸업 예정		
	주 소			
담 임 교 사	성 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의 견	※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예시) 위 학생은 ○○중학교 3학년 재학 시 --~~ 사안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보호조치(6호)를 받은 바 있음('21.8.18). 그러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와 동일 학교로 배정을 받게 되어 정상적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서로 다른 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고, 본교는 이러한 학교폭력 사실에 기초하여 피해학생의 요청을 인정하오니, 재배정을 요청하는 피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재배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보호조치 결과 통보 공문 사본 1부		

20 년 월 일

() 중 학 교 장 [직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2023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입학예정자(합격자)중
경상남도 평준화지역 내 거주이전자 입학 전 선배정 계획

1. 목적

2023학년도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 가족이 경상남도 평준화 지역(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내 거주 이전으로,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 입학에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 전에 학교를 미리 배정(선배정)함으로써,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입학 후의 전입학으로 인한 학습 결손을 예방하고, 원만한 교우관계 조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교과서, 교복) 등 제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근거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2항
- 나. 「초·중등 장학담당 장학관 회의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0-391, 1999.11.22.)

3. 대상

- 가.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출신중학교 소재 지역에서 해당 지역 2023학년도 일반고·자공고 전형에 응시하여 입학이 예정된 자(합격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전입학 제한일(2022.11.1.)부터 선배정 신청서 접수일까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의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된 자
- 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자(타 시·도)가 이전 거주지의 해당 지역 2023학년도 일반고·자공고 전형에 응시하여 입학이 예정된 자(합격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평준화지역 후기 일반고 원서접수 마감(2022.12.21.) 후부터 선배정 신청서 접수일까지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거제시의 평준화지역으로 이전된 자

4. 시행 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2022. 2. 6.(월) 09:00 ~ 2. 15.(수) 17:00
 - ※ 신청서는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부서별 누리집/진로교육과-자료실에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음(<http://www.gne.go.kr>)
- 나. 접수처 :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3층)

다. 제출서류

- 1)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평준화지역 전입자 선배정 신청서 1부<서식1>
 - 가) 합격(비평준화지역) 또는 배정받은(평준화지역) 고등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 나) 출신중학교장 확인서 1부(신청서에 포함)
 - 2) 해당 시·도 소재 일반고·자공고 합격증 또는 배정 통지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고, 전 가족⁸⁾ 등재 및 거주변동 내용이 기재된 것)
 - 4) 해당자 추가 서류
 - 가) 부모 중 한사람의 직장 또는 사업장 관계로 거주지 이전이 불가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 (1) 학생의 친권자인 부모가 거주지에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기본증명서 1부(학생)
 - (2)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모가 거주지에 이전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학생), 기본증명서 1부(학생), 친권자의 친필동의서 1부
 - (3)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제적등본 1부(제적 사항이 기재된 것)
- ※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2>

◎ 거주 사실 판단 기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실제 거주 : 전 가족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실거주로 간주함<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형제, 자매, 친척에게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나. 공무원, 군인, 회사원 등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하여 부모 중 일방이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증빙서류 필요)2. 거주 위장
※ 다음의 경우는 거주 위장 사례로 간주함<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주민등록만 현 주소지로 이전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나.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고, 일부 가족만 거주하는 경우
<단, 1의 '나'항 해당자 제외>다. 친척 또는 친지 및 타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
|---|

라. 추첨 및 배정 발표 : 2023. 2. 17.(금) 14:00 도교육청 누리집 진로교육과 자료실 탑재

마. 배정 방법

8) 전 가족 범위: 부, 모, 해당 학생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교별 입학정원의 5% 내에서 정원 외 배정하되, 배정 계획 인원보다 지원 희망자가 많은 경우 제1, 제2지망 순서에 따라 배정함. 단, 제 1, 2 지망교에 배정되지 않은 자는 미달학교에 무작위 추첨 배정함

바. 입학등록 : 2023. 2. 20.(월) ~ 2. 22.(수)

※ 선배정 학교를 방문하여 거주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등록

5. 기대 효과

가. 신학기 전입학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해소

나. 거주지 이전에 따른 학생들의 입학 및 전학 행정절차 간소화

다. 전입학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 결손 및 학부모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

6. 기타 유의사항

가. 선배정 희망학교는 2지망 학교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나. 학교를 선배정 받은 후에는 배정 학교를 변경할 수 없음

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위장 전입임이 밝혀질 경우 배정을 취소함

라. 원배정학교에 입학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선배정 학교장은 선배정 신청 학생의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실제 거주 사실 확인 및 조사 실시

※ 문의처 :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과 ☎ 268-1388, 1389

<서식1>

2023. 타 시·도 일반고·자공고 평준화지역 전입자 선배정 신청서

경상남도교육청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접수번호	
배정 희망 학교	제1희망 학교				제2희망 학교			
현주소 (도로명주소)								
보호자	성명		학생과의 관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			근무처 :			
입학 예정 (합격) 사실 증명	입학 예정 (합격) 고등학교	위 학생은 2023학년도 본교의(신입생으로 배정된,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로서 귀 교육청 관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배정 지원에 동의함 2023년 2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학교 우편번호 : 학교 주 소 :						
	출신 중학교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위 학생은 년 월 일 본교의 (졸업예정자, 졸업자)로서 2023학년도 일반고(자공고) 신입생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임을 증명함 2023년 2월 일 중학교장 (직인) 학교 전화번호 : 학교 FAX번호 : 학교 우편번호 : 학교 주 소 :						
상기와 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귀 교육청 관내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배정을 희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일 지원자 (인) 보호자 (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입학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배정원서 발급에 이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②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에 이용 : 성명,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③ 단,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등)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 다만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파기합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정보 보유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보호번호, 지체부자유 여부, 주소, 핸드폰번호, 연락처 등
민감정보 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본인확인, 입학 전 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배정원서 발급
민감정보 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출 후 준영구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단, 폐기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즉시 파기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
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법 적 대 리 인

이 름 (인)

주민번호

동의자와의 관계

동 의 자

이 름 (인)

2023년 월 일

경상남도교육감 귀하